

기안자 **지방행정주사** 전과번호 **341** 공보필 **요불필요**  
 장영심

보인장원 인사과장 내부국장 제1부서장 지



**전결**



7.22

영조카 **시정국장** 보충  
 서명 **김계** 변함

기년월일 **1964. 7. 10.** 시발일 **1964. 7. 23** 통제번호  
 분류기호 **서울특별시 예가 제 201 호 (2.4086)**  
 정수장 유신조 수신지 **상조** 발송지 **서울특별시**

제목 **임용권 취득(5급 및 기능직)에 대한 인사처리 (예규)**

1. 서울특별시 규칙 제399호(지방공무원 임용권 취득 64.2.26)

및 서울특별시 훈령 제163호(국가공무원의 임용권 취득 63.9.17) 및  
 서울특별시 훈령 제173호(기능직공무원 임용권 내부취급 64.2.10)에 의  
 기 구 및 사업소 (공무원교육원, 농촌지도소, 노동위원회의 사무국 포함)

에 속하는 5급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취득으로 인한 구  
 간 전보 사업소간 전보와 구와 사업소간 및 상호전보에 대한 인사처  
 리는 다음에 의하여 처리할 것.

2. 인사전보 규정

가. 5급공무원의 구간(공무원교육원 포함) 인사전보는 인

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16조(전출, 전입동의 요구서식) 및  
 제17조(전출, 전입 동의서식)의 규정에 의한 소속장의 동의를 받아

이 법하고 일치 서식제 의거 5급이내 시장에게 보고  
하여야 한다.

나.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는 전보 및 전출, 전입  
의 요구 및 동의를 할수 없다.

(1) 국가공무원법 제14조 및 지방공무원법  
제17조의 전보 제한 규정에 해당하는자

(2) 정원에 맞지 않거나 기관적으로 공정한 인사관리  
에 위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다. 기능직 공무원의 구간 및 사업소간과 구와 사업소 상  
호간의 전보또 전 가할 및 다함에 의하여 제외한다.

마. 전 다항 각호의 규정에 의해된 인사권호는 시장이 임  
방적으로 취소할수 있다.

바.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, 소속 장관을  
달리하는 공무원에 대한 할에전인 임용 및 전출 동의는 시장의 사전  
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

바. 본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인사 담당자를 문책한다.

우신치

"공"

다. 1. 1000년 1-9, 1001-34, 1011, 1021-9

1001-82

5-2

( 서 식 1 )

기 관 별

분류기호

1964.

수 신 내무국장

참 조 인사과장

제 목 전보발령 보고( 할애전입)

1. 다음과 같이 인사발령이되었기 보고합니다.

2. 발령사실

( 전 소 수 )

(회급)

(성명)

○ ○ 구(사업소) 전입을 명함.

○ ○ 과 근무를 명함.

1964.

발 령 권 자

본 질 할애 통역서 사본 1통 첨부

발신인 지, 성명 :

(인)

(제 163 서약)

別紙 第 17 號 普式

~50~

# 公務員轉入, 轉出 同意 要求 書 (기판명)

분류기호

19. . . . .

수신

참조

제목

공무원 전입, 전출 동의 요구

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의 처리에  
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무원 전입, 전출을  
요구하며  
동의 여부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인 적 사 항	소속			
	성명	직명	생년월일	가족의자
	본직			
	현주소			
전출 사유				

첨: 인사기록카드

(16점)

○ ○ ○ 장 ○ ○ ○

(제17조 서식)

別紙 第18號普試

# 公務員轉出轉入同意書

(가 관 별)

분류기호 .

수신

참조

개봉 공무원 전출, 전입 동의

공무원 인사 기록 및 사무처 비외의 제 조의 규정  
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무원 전입, 전출 요구에 대한  
동의 여부를 통보합니다

소속			
성명	직급	생년월일	계좌번호
본역			
주소			
동의			
부동의			
부동의 이유			

○ ○ ○ 장 ○ ○ ○  
~ ~ ~

(16점)